대전 하늘채 스카이앤Ⅱ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I-IA NUL CHE

※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,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자료는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※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산정하므로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

구분	신청접수일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	자격검증 서류제출
일자	2021.12.27(월) (09:00~17:30)	•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(스마트폰앱 포함)을 원칙으로 함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	2022.01.05(수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	2022.01.06(목)~01.16(일) (11일간) (10:00~17:00)

※ 인터넷 청약접수는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 금융인증서,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. 단,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(10:00~14:00)에서 접수 가능(은행창구 접수 불가)하며 방문 시 서류 부족 및 서류 접수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) : 74세대

타 입	84A	84B	84C	합계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	31	22	21	74

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 용
신청자격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 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•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① 신청자의 자녀 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: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
선정방법	•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• 미달 시 :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) 거주자 공급
경쟁 시 우선순위	• 경쟁이 있는 경우,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가점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•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※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 고
		기 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 · 도 거주 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(대전광역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의 분리세대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O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O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	O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O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	O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) •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(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)
	O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병적증명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※ 계약 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등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니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람				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	O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•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)
		O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	O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	O	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 자녀의 미혼여부 확인
		O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(의료기관 등록번호, 연락처, 담당의사명, 출산예정일 기재 및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)
		O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O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임신의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	O	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주택	•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O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주택	•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
		O	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	해당주택	•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
		O	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	해당주택	• 주택공시가격확인서,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,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	O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인감증명서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. 단,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) • 인감도장 제출 생략 :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
	O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• 본인서명확인 방식 : 청약자가 자필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)
	O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1년 12월 17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